第299回國會 (臨時會)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4月14日(木)

場 所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학교사회복지법안
56.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
70.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
90.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
9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9.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10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1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김우남·김성수·김정·손범규·송영선·김옥이·김소남·김효재·이애주 의원 발의) ····· 11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김형오・홍사덕・김세연・손범규・김정권・신성범・김정훈・김금래・심대평・이정선・이영애・김학송・서병수・이사철・박준선・주광덕・이병석・조전혁・강용석・유재중・안경률・김혜성・정장선・김부겸・박영아・이종혁・현기환・박민식・김호연・현경병・정해걸・김성동・전재희・원혜영・김영우 의원 발의) ····· 12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문학진・조영택・김재균・전병헌・조정식・정동영・최규성・장세환・박우순・장병완・박지원・김진애・김진표・전혜숙・최문순・박은수・노영민・오제세・추미애・김재윤・유성엽 의원 발의) ····· 12
4.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조전혁・강석호・김선동・김세연・김학용・서상기・신지호・이명수・이성헌・이시종・이인기・이한성・이화수・임해규・정두언・한선교 의원 발의) ····· 12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정권・이한성・김성수・유성엽・홍정욱・김기현・이명수・박보환・임동규・권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5) ····· 12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유승민・이해봉・유성엽・정영희・이한성・김태원・박영아・권경석・원희목・강석호 의원 발의) ····· 12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 12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서상기・김태원・이명수・신상진・이성헌・이해봉・정영희・김성태・남경필 의원 발의) ····· 12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헌・김정훈・조전혁・황영철・정두언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7) ····· 12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이한성・유기준・안형환・홍희덕・정수성・유성엽・이명수・정의화・김성회・김무성 의원 발의) ····· 12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영진・김세연・정두언・박보환・서상기・이군현・정영희・안민석・진수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045) ····· 12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 12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원희룡・유정현・손숙미・김성수 의원 발의) ····· 12
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권택기・황영철・윤석용・현기환・신성범・김성태・김세연・박민식・임해규・주광덕・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40) ····· 12
1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박보환・김세연・조전혁・박종근・한선교・정희수・임해규・김태환・이해봉・이한성・이계진・이철우・이군현・구상찬・이종혁・김효재・이화수 의원 발의) ····· 12
1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조전혁・이철우・정희수・서상기・박영아・홍준표・구상찬・김선동・정영희・황우여・정두언・이한성・김세연 의원 발의) ····· 12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송영선・이미경・홍영표・손범규・황영철・김성태・김혜성・이한성・이화수・이철우・이성헌・유성엽 의원 발의) ····· 12
1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송민순・박기춘・신건・김재윤・김재균・심대평・최재성・장세환・안민석・박주선・김유정・홍영표・유성엽・서갑원・김춘진・김상희・김영진・홍희덕・백재현・이미경・정범구・김진애・안홍준・홍정욱・백원우・강창일 의원 발의) ····· 12
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백원우・박기춘・김동철・이종걸・박영선・서종표・이성남・조경태・김효석・이윤석・유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81) ····· 12

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재윤・유성엽・김영진・조영택・최재성・이용경・오제세・이용희・김진표・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6176) ····· 13
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박은수・홍영표・홍사덕・홍희덕・이한성・이명수・김효재・김재윤・한선교・이해봉・정수성・오제세・유성엽・신영수・원희룡・김창수 의원 발의) ····· 13
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정영희・조전혁・이종걸・이윤석・안민석・김재윤・김영록・이인제・김성곤・서종표・홍영표・최문순・유성엽・조영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1) ····· 13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이찬열・안민석・문학진・장병완・김상희・권영길・천정배・조배숙・이정희・유성엽・조승수 의원 발의) ····· 13
24.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최문순・유성엽・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조승수・정동영・유원일・김유정・안민석・김영진 의원 발의) ····· 13
2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옥이 의원 대표발의)(김옥이・정옥임・강성천・박대해・김무성・한선교・유기준・정해걸・이한성・서상기・유정복・원희목・김영우・박준선・김충환・이종혁 의원 발의) ····· 13
26.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이한성・한선교・원희룡・이성헌・김성태・김영선・손숙미・박보환・홍준표・김을동 의원 발의) ····· 13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정미경・신영수・이한성・이정선・윤상현・강성천・김정훈・손범규・신성범・김영진 의원 발의) ····· 13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홍희덕・유성엽・강기갑・곽정숙・이정희・김춘진・김종률・조승수・김영진・유원일・안민석・이명수・김재윤・강기정 의원 발의) ····· 13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서상기・김태원・이명수・신상진・이성헌・이해봉・정영희・김성태・남경필 의원 발의) ····· 13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헌・김정훈・조전혁・황영철・정두언 의원 발의) ····· 13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영진・김세연・정두언・박보환・서상기・이군현・정영희・안민석・진수희 의원 발의) ····· 13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권영길・권영진・유성엽・강기갑・오제세・김재윤・김영록・김영진・안민석 의원 발의) ····· 13
3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정의화・박보환・허원제・김성조・유일호・이한성・윤상현・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 ····· 13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정권・이한성・김성수・유성엽・홍정욱・김기현・이명수・박보환・임동규・권영진 의원 발의) ····· 13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박준선・이명수・이성헌・김정권・김성회・임동규・김태원・이한성・유승민・유기준・김종률 의원 발의) ····· 13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조진형・김성조・원유철・정갑윤・최인기・이은재・이명수・김태원・최규식・신지호・장제원・유정현・김소남・정수성・안경률・김충조・이범래 의원 발의) ····· 13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이정선・남경필・정수성・김성식・김선동・이혜훈・김세연・조전혁・김금래・조문환・김용태・정미경・이철우・정태근 의원 발의) ····· 13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안민석・김영록・양승조・이성남・김재균・조영택・최재성・오제세・박상돈・조승수・박은수・김춘진 의원 발의) ····· 13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진복・유승민・유기준・이명수・안효대・이한성・이인기・안홍준・박민식・정갑윤・박준선・박선영・정해걸・이윤성・권

성동・김성수・이계진・김춘진・김금래・김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3) ····· 14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최영희・이찬열・김춘진・조영택・이용섭・정장선・김부겸・강기정・김동철 의원 발의) ····· 14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권영길・전병헌・신학용・이찬열・백원우・김영진・강기정・김춘진・안민석・최영희・최규식・유원일 의원 발의) ····· 14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기준・허원제・유승민・유성엽・이한성・배영식・황영철・강용석・정해걸・김성태・박보환・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7846) ····· 14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박은수・홍영표・홍사덕・홍희덕・이한성・이명수・김효재・김재윤・한선교・이해봉・정수성・오제세・유성엽・신영수・서갑원・원희룡・김창수 의원 발의) ····· 14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최재성・안민석・김영진・이종걸・문학진・조경태・백재현・변재일・원혜영・이용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3) ····· 14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이한성・이정선・조진래・박대해・이사철・송민순・이혜훈・강명순・권영세・장광근 의원 발의) ····· 14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정영희・조전혁・이종걸・이윤석・안민석・김재윤・김영록・이인제・김성곤・서종표・홍영표・최문순・유성엽・조영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2) ····· 14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강기정・김상희・김재균・박은수・신건・안민석・양승조・이미경・이석현・이찬열・전혜숙・최재성 의원 발의) ····· 14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송영선・김우남・이미경・신낙균・박영선・조영택・오제세・손범규・김진표・유원일・김영록 의원 발의) ····· 14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임영호・이명수・이용희・변웅전・유성엽・김용구・권선택・류근찬・심대평 의원 발의) ····· 14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김을동・홍정욱・김태원・이은재・손범규・윤석용・이한성・노철래・김소남・이해봉・강용석・박순자・허원제・신낙균 의원 발의) ····· 14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은수・장세환・양승조・전현희・김유정・안민석・김영진・김부겸・백재현・강기갑・이정희・홍희덕・권영길・유성엽・유선호・최영희 의원 발의) ····· 14
5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김우남・유성엽・이명수・권영길・홍희덕・이인기・곽정숙・이정희・박영선・김재윤・김영진・조승수・정동영・유원일 의원 발의) ····· 14
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고승덕・김성태・김세연・김태환・서상기・정두언・정수성・정해걸・조전혁 의원 발의) ····· 14
55. 학교사회복지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우윤근・장윤석・주성영・손범규・홍일표・노철래・박영선・박지원 의원 발의) ····· 14
56.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김창수・최인기・김영록・김영진・박은수・주승용・김효석・강운태・이윤석・김재균・강기정・서갑원・양승조・최철국・백재현・박주선・김동철・오제세・안민석・송영길・정동영・이종걸・정장선 의원 발의) ····· 14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김소남・신학용・손범규・송영선・이한성・노철래・김성태・윤석용・박민식 의원 발의) ····· 14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정영희・심대평・조경태・송영선・임영호・노철래・유정현・임해규・윤상일・박보환・조전혁・허천・김정・정해걸・김혜성・안민석・김용구・김춘진・황우여・김영진 의원 발의) ····· 15
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김금래・김세연・박은수・신낙균・신영수・안홍준・원희룡・원희목・유정현・이두아・이인기・이한성・이

해봉・조영택・한선교・허원제・홍영표・홍정욱・홍희덕・황우여 의원 발의) ····· 15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유원일・고승덕・이찬열・유성엽・김재윤・최문순・정범구・전혜숙・조영택・박선숙 의원 발의) ····· 15
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영록・조배숙・주승용・백재현・김우남・최규성・여상규・정영희・박영선・권영길 의원 발의) ····· 15
6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강창일・박기춘・오제세・주승용・이용섭・김영록・조영택・김동철・강기정・유성엽・이시종・김재윤・김상희 의원 발의) ····· 15
6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홍정욱・신학용・배영식・정해걸・이윤석・신영수・유성엽・서병수・이종혁・정병국・김성태・손범규・박민식・임영호・이명수・김선동・심대평・권경석・김효재・황우여・이정선・한선교 의원 발의) ····· 15
6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강용석・권경석・김부겸・김태원・여상규・이용섭・이윤성・정두언・정해걸・최구식・현기환 의원 발의) ····· 15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신학용・유기준・김정권・김성순・권영진・임영호・이성헌・이명수・이한성・배영식・조배숙・이해봉・윤상현・정병국・손숙미 의원 발의) ····· 15
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이한성・신상진・김동철・유성엽・김성곤・전혜숙・김영록・이용경・유원일 의원 발의) ····· 15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현경병・이찬열・최경희・이한성・이인기・신상진・박순자・주성영・정갑윤 의원 발의) ····· 15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영록・조배숙・이종걸・주승용・백재현・김우남・최규성・여상규・정영희・박영선・권영길 의원 발의) ····· 15
69.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정영희・이한성・김정권・유성엽・이해봉・임영호・심대평・이시종・조경태・김성곤・권영진・김부겸・임해규・이군현・조전혁 의원 발의) ····· 15
70.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송민순・안규백・허원제・박보환・서상기・조전혁・이성헌・조문환・김용태 의원 발의) ····· 15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박영아・임해규・이군현・김선동・조전혁・박보환・권영진・이철우・김세연・정두언・황우여 의원 발의) ····· 15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강기정・김영진・김재균・조배숙・최규식・조승수・최재성・조영택・김부겸・우제창・김동철 의원 발의) ····· 15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신학용・김성태・김재윤・이춘식・정해걸・한선교・김우남・박준선・정갑윤・신성범・이사철・이계진・원유철・정진섭・송훈석 의원 발의) ····· 15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김학송・권영세・진영・유승민・김성식・김옥이・심대평・이진삼・정의화・정하균・이성헌・원유철・노철래・황진하・김성곤・이한성・서상기・이윤성・최연희・윤상일・김혜성・유성엽・권성동・이용경・김장수・원희룡・오제세・송민순・박진 의원 발의) ····· 15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정옥임・김성회・이한성・김학용・박준선・김옥이・황영철・조원진・김용태・유정현・이철우・조진래・강석호・김성식・황우여・윤석용・강용석・정해걸・배은희・이은재・김정권・강명순・나성린・강성천・박종근・홍사덕・이종혁・장광근・최구식・정진섭・이범래・손범규・최병국・구상찬・김장수・안효대・신지호・고승덕・이윤성・주광덕・이명규・황진하・김선동・장윤석・김소남・박희태・허천・김광림・백성운・김충환・임두성・차명진・윤영・김효재・조문환・진성호・조윤선・원희룡・정양석・현기환・조진형 의원 발의) ····· 16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찬열・안민석・김재윤・양승조・김우남・백재현・이성남・송영선・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108) ····· 16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찬열・안민석・김재윤・양승조・김우남・백재현・이성남・송영선・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121) ····· 16
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창수・임영호・이명수・권선택・김낙성・류근찬・변웅전・김용구・권영길 의원 발의) ····· 16
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강기정・조정식・전혜숙・김진애・안민석・김우남・박은수・김상희 의원 발의) ····· 16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장병완・양승조・유선호・이용섭・김재윤・전혜숙・홍희덕・권영길・강기갑・최재성・김재균・김우남・김영진・조영택・안민석・유성엽・박선숙・백재현・박은수 의원 발의) ····· 16
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곽정숙・이정희・강기갑・홍희덕・유성엽・김영진・안민석・조승수・김상희 의원 발의) ····· 16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동철・최규성・안민석・장세환・장병완・김상희・권영길・홍영표・김재균 의원 발의) ····· 16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김성태・이성헌・조전혁・황영철・정두언・이해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7577) ····· 16
8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화수・윤영・송훈석・안형환・김세연・김영우・조진형・김금래・김우남 의원 발의) ····· 16
8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손숙미・이종혁・원희목・조원진・조진래・박순자・김정권・이명규・박종근・배은희・이두아・박보환 의원 발의) ····· 16
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097) ····· 16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43) ····· 16
89.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조전혁・서상기・박보환・신지호・이상권・김동성・원희룡・김옥이・김성회・배은희・이한성・장윤석・권영진・이사철・강용석・김재경・김낙성・유일호・강승규・최구식・김충환・김호연 의원 발의) ····· 16
90.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조전혁・서상기・김용태・김세연・황우여・박보환・신상진・원유철・이애주・정옥임・정두언・권영진・임태희・이군현・박영아 의원 발의) ····· 16
9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정병국・이정선・박순자・이영애・김성조・이애주・윤상현・신지호・조진래 의원 발의) ····· 16
9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백재현・양승조・장세환・변재일・안민석・박기춘・송민순・김충조・서갑원 의원 발의) ····· 16
9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유성엽・김재경・유승민・권성동・이한성・유기준・김부겸・김태원・홍정욱・손숙미・현기환・송영선・신성범・박상돈・최인기・이성헌・이인기・이정현・김성태・김정권・김정훈・김성회 의원 발의) ····· 16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최영희・김영록・김부겸・김영진・이찬열・김동철・박은수・박기춘・김재균・오제세・백원우・김춘진・최문순・조승수・송영길・신학용・강기정・조경태・이춘석・권영길・안민석・서종표・강기갑・김우남・김성순・서갑원・신건・이명수・강창일・이정희・박선숙 의원 발의) ····· 17
9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영진・김춘진・권영길・박은수・박주선・안규백・양승조・원혜영・이종걸・이춘석・조영택 의원 발의) ····· 17
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성수・손범규・이인기・김성태・김금래・이성헌・홍사덕・안형환・허원제・강승규 의원 발의) ····· 17
9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안홍준・이한성・신상진・김효재・

이성헌・박보환・서상기・정두언・김충환・권영진 의원 발의) ····· 17
9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현경병・김동철・박선숙・유성엽・박은수・김성곤・전혜숙・김영록・이용경・유원일 의원 발의) ····· 17
99.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박보환・손숙미・김세연・박영아・홍정욱・조원진・이해봉・유승민・원희목 의원 발의) ····· 17
10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백재현・양승조・장세환・변재일・안민석・박기춘・송민순・김충조・서갑원 의원 발의) ····· 17
1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성수・손범규・이인기・김성태・김금래・홍사덕・안형환・허원제・강승규 의원 발의)(의안번호10408) ····· 17
1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영우・신상진・차명진・이종혁・이화수・유성엽・김금래・주광덕・유정현 의원 발의) ····· 17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인기・김성수・권영진・김성동・이한성・성윤환・김금래・신영수・김성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97) ····· 17
1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김상희・장세환・권영길・장병완・김동철・홍영표・박주선・안민석・유성엽 의원 발의) ····· 17
1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윤석용・이철우・김영우・최구식・김세연・서상기・박보환・황영철・이정현・김선동・신성범・정갑윤・정두언・주광덕 의원 발의) ····· 17
106.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10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용구・김우남・신건・강창일・정동영・김성수・김춘진・김상희・권영길・안민석・김유정・곽정숙・김영진 의원 발의) ····· 17
10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기준・김선동・임해규・권영진・유정현・이종혁・장제원・황영철・김성태 의원 발의) ····· 17
1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장제원・이윤성・신영수・이종혁・정의화・안상수・현경병・현기환・권영진・김정권・박순자・나성린・윤상일・이인기 의원 발의) ····· 17
1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용구・김우남・신건・강창일・정동영・김성수・김춘진・김상희・권영길 의원 발의) ····· 17
1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오제세・안민석・김춘진・최문순・홍재형・김영진・김유정・노영민・유성엽・조경태・박병석 의원 발의) ····· 17
1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김성곤・유승민・이인기・조진래・이성헌・이종혁・김혜성・정영희・윤상일 의원 발의) ····· 17
11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허원제・박보환・김세연・권영진・전혜숙・김소남・서상기・안효대・유성엽・임해규・이군현・배은희 의원 발의) ····· 18
114.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115.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용구・김우남・신건・강창일・정동영・김성수・김상희・안민석・김유정・김영진 의원 발의) ····· 18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21
1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김태원・이한성・주광덕・김혜성・박보환・현기환・고흥길・홍사덕・임해규・박준선・김성수・정미경 의원 발의) ····· 21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변재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국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다.

○위원장 변재일 예, 말씀하시지요.

○조전혁 위원 오늘 여러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는데요, 상정 원칙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실은 인천대국립대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인천대국립대법안은 사실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몇 가지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여야 관계없이 인천의 의원 전체가, 신학용 의원님도 그렇고 홍영표 의원님도 빨리 해 달라고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지금 민주당 출신의 송영길 시장께서도 이것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촉구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천시 성인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거의 대부분이 되는 130만 명 인천시민들이 인천에 국립대 법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인천대 국립화에 대한 안이 언제 나왔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당시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의한 지도 오래 된 법안을 계속 간사가 비토(veto)를 하고, 이게 간사 하나를 위한 위원회입니까?

위원장님, 간사 간에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는 협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고 간사들 두 분께 이번 법률안을, 상정대상법률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난번에 조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양 교섭단체에서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법률안을 추가적으로 받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법률안, 세 가지를 받아서 오늘 상정 법률안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전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하고 최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 2개 법안은 오늘 아침까지 조율했습니다만 최종적인 조율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법률안도 아직까지 간사 간에 최종 협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민주당 전체의 당론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아니면 안민석 간사 혼자서 이렇게 하는 작품인지. 그래야지 저도 인천에 가 가지고 인천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위원과 야권 위원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안민석 간사의 혼자 의견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재일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주광덕 위원 예, 오늘 상정 예정인 법률안을 보면 상당히 많고,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오늘 상정 예정에 있는 70건 중 한 건인데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다수의 의원들이 상정을 희망하고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민주당 간사 위원님께 상정에 관한 상당한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말씀하는데 저희 한나라당 간사 위원인 서상기 위원하고 전혀 전화도 통화되지 않고 출석도 하고 있지 않아서, 서상기 위원도 다른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상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손범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오늘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법률안 상정절차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다시 추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전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협의하고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처리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전혁 위원 민주당 신학용 의원님하고 홍영표 의원님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의 당론을 어겨

가면서 상정 촉구 결의안을 내신 것인지, 송영길 시장님도 마찬가지인 것인지? 인천시의회 대다수 민주당 의원님들도 민주당 전체 당론을 거스르면서 이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사후에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3분)

○위원장 변재일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의하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5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할 법안 중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5일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영진 의원 법안은 시간강사의 신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 정부에서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의 법률로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고, 박영아 의원 법안은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가급적 조속히 재해예방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 2건의 법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9개의 법률안을 심의·처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구로 하는 등 원자력안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임시국회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내용을 담은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당시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 개정안을 다시 우리 위원회로 회수해서 이번 회기에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 법안과 함께 병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의하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 예정인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연계 학자금융자특별법안은 소득연계학자금융자계정을 국가장학기금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010년 1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함께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위원장과 양 간사 간에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김우남·김성수·김정·손범규·송영선·김옥이·김소남·김효재·이애주 의원 발의)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김형오·홍사덕·김세연·손범규·김정권·신성범·김정훈·김금래·심대평·이정선·이영애·김학송·서병수·이사철·박준선·주광덕·이병석·조전혁·강용석·유재중·안경률·김혜성·정장선·김부겸·박영아·이종혁·현기환·박민식·김호연·현경병·정해걸·김성동·전재희·원혜영·김영우 의원 발의)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문학진·조영택·김재균·전병헌·조정식·정동영·최규성·장세환·박우순·장병완·박지원·김진애·김진표·전혜숙·최문순·박은수·노영민·오제세·추미애·김재윤·유성엽 의원 발의)
4.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조전혁·강석호·김선동·김세연·김학용·서상기·신지호·이명수·이성헌·이시종·이인기·이한성·이화수·임해규·정두언·한선교 의원 발의)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정권·이한성·김성수·유성엽·홍정욱·김기현·이명수·박보환·임동규·권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5)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유승민·이해봉·유성엽·정영희·이한성·김태원·박영아·권경석·원희목·강석호 의원 발의)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서상기·김태원·이명수·신상진·이성헌·이해봉·정영희·김성태·남경필 의원 발의)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헌·김정훈·조전혁·황영철·정두언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7)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이한성·유기준·안형환·홍희덕·정수성·유성엽·이명수·정의화·김성회·김무성 의원 발의)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영진·김세연·정두언·박보환·서상기·이군현·정영희·안민석·진수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045)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김충환·권경석·원희룡·유정현·손숙미·김성수 의원 발의)
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권택기·황영철·윤석용·현기환·신성범·김성태·김세연·박민식·임해규·주광덕·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40)
1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박보환·김세연·조전혁·박종근·한선교·정희수·임해규·김태환·이해봉·이한성·이계진·이철우·이군현·구상찬·이종혁·김효재·이화수 의원 발의)
1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조전혁·이철우·정희수·서상기·박영아·홍준표·구상찬·김선동·정영희·황우여·정두언·이한성·김세연 의원 발의)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송영선·이미경·홍영표·손범규·황영철·김성태·김혜성·이한성·이화수·이철우·이성헌·유성엽 의원 발의)
1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송민순·박기춘·신건·김재윤·김재균·심대평·최재성·장세환·안민석·박주선·김유정·홍영표·유성엽·서갑원·김춘진·김상희·김영진·홍희덕·백재현·이미경·정범구·김진애·안홍준·홍정욱·백원우·강창일 의원 발의)
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백원우·박기춘·김동철·이종걸·박영선·서종표·이성남·조경태·김효석·이윤석·유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81)

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재윤・유성엽・김영진・조영택・최재성・이용경・오제세・이용희・김진표・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6176)

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박은수・홍영표・홍사덕・홍희덕・이한성・이명수・김효재・김재윤・한선교・이해봉・정수성・오제세・유성엽・신영수・원희룡・김창수 의원 발의)

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정영희・조전혁・이종걸・이윤석・안민석・김재윤・김영록・이인제・김성곤・서종표・홍영표・최문순・유성엽・조영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1)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이찬열・안민석・문학진・장병완・김상희・권영길・천정배・조배숙・이정희・유성엽・조승수 의원 발의)

24.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최문순・유성엽・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조승수・정동영・유원일・김유정・안민석・김영진 의원 발의)

2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옥이 의원 대표발의)(김옥이・정옥임・강성천・박대해・김무성・한선교・유기준・정해걸・이한성・서상기・유정복・원희목・김영우・박준선・김충환・이종혁 의원 발의)

26.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이한성・한선교・원희룡・이성헌・김성태・김영선・손숙미・박보환・홍준표・김을동 의원 발의)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정미경・신영수・이한성・이정선・윤상현・강성천・김정훈・손범규・신성범・김영진 의원 발의)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홍희덕・유성엽・강기갑・곽정숙・이정희・김춘진・김종률・조승수・김영진・유원일・안민석・이명수・김재윤・강기정 의원 발의)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서상기・김태원・이명수・신상진・이성헌・이해봉・정영희・김성태・남경필 의원 발의)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헌・김정훈・조전혁・황영철・정두언 의원 발의)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영진・김세연・정두언・박보환・서상기・이군현・정영희・안민석・진수희 의원 발의)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권영길・권영진・유성엽・강기갑・오제세・김재윤・김영록・김영진・안민석 의원 발의)

3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정의화・박보환・허원제・김성조・유일호・이한성・윤상현・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정권・이한성・김성수・유성엽・홍정욱・김기현・이명수・박보환・임동규・권영진 의원 발의)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박준선・이명수・이성헌・김정권・김성회・임동규・김태원・이한성・유승민・유기준・김종률 의원 발의)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조진형・김성조・원유철・정갑윤・최인기・이은재・이명수・김태원・최규식・신지호・장제원・유정현・김소남・정수성・안경률・김충조・이범래 의원 발의)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이정선・남경필・정수성・김성식・김선동・이혜훈・김세연・조전혁・김금래・조문환・김용태・정미경・이철우・정태근 의원 발의)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안민석・김영록・양승조・이성남・김재균・조영택・최재성・오제세・박상돈・조승수・박은수・김춘진 의원 발의)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진복·유승민·유기준·이명수·안효대·이한성·이인기·안홍준·박민식·정갑윤·박준선·박선영·정해걸·이윤성·권성동·김성수·이계진·김춘진·김금래·김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3)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최영희·이찬열·김춘진·조영택·이용섭·정장선·김부겸·강기정·김동철 의원 발의)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권영길·전병헌·신학용·이찬열·백원우·김영진·강기정·김춘진·안민석·최영희·최규식·유원일 의원 발의)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기준·허원제·유승민·유성엽·이한성·배영식·황영철·강용석·정해걸·김성태·박보환·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7846)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박은수·홍영표·홍사덕·홍희덕·이한성·이명수·김효재·김재윤·한선교·이해봉·정수성·오제세·유성엽·신영수·서갑원·원희룡·김창수 의원 발의)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최재성·안민석·김영진·이종걸·문학진·조경태·백재현·변재일·원혜영·이용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3)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이한성·이정선·조진래·박대해·이사철·송민순·이혜훈·강명순·권영세·장광근 의원 발의)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정영희·조전혁·이종걸·이윤석·안민석·김재윤·김영록·이인제·김성곤·서종표·홍영표·최문순·유성엽·조영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2)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강기정·김상희·김재균·박은수·신건·안민석·양승조·이미경·이석현·이찬열·전혜숙·최재성 의원 발의)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송영선·김우남·이미경·신낙균·박영선·조영택·오제세·손범규·김진표·유원일·김영록 의원 발의)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임영호·이명수·이용희·변웅전·유성엽·김용구·권선택·류근찬·심대평 의원 발의)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김을동·홍정욱·김태원·이은재·손범규·윤석용·이한성·노철래·김소남·이해봉·강용석·박순자·허원제·신낙균 의원 발의)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은수·장세환·양승조·전현희·김유정·안민석·김영진·김부겸·백재현·강기갑·이정희·홍희덕·권영길·유성엽·유선호·최영희 의원 발의)

5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김우남·유성엽·이명수·권영길·홍희덕·이인기·곽정숙·이정희·박영선·김재윤·김영진·조승수·정동영·유원일 의원 발의)

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고승덕·김성태·김세연·김태환·서상기·정두언·정수성·정해걸·조전혁 의원 발의)

55. **학교사회복지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우윤근·장윤석·주성영·손범규·홍일표·노철래·박영선·박지원 의원 발의)

56.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김창수·최인기·김영록·김영진·박은수·주승용·김효석·강운태·이윤석·김재균·강기정·서갑원·양승조·최철국·백재현·박주선·김동철·오제세·안민석·송영길·정동영·이종걸·정장선 의원 발의)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김소남·신학용·손범규·송영선·이한성·노철래·김성태·윤석용·박민식 의원 발의)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정영희·심대평·조경태·송영선·임영호·노철래·유정현·임해규·윤상일·박보환·조전혁·허천·김정·정해걸·김혜성·안민석·김용구·김춘진·황우여·김영진 의원 발의)

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김금래·김세연·박은수·신낙균·신영수·안홍준·원희룡·원희목·유정현·이두아·이인기·이한성·이해봉·조영택·한선교·허원제·홍영표·홍정욱·홍희덕·황우여 의원 발의)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유원일·고승덕·이찬열·유성엽·김재윤·최문순·정범구·전혜숙·조영택·박선숙 의원 발의)

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영록·조배숙·주승용·백재현·김우남·최규성·여상규·정영희·박영선·권영길 의원 발의)

6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강창일·박기춘·오제세·주승용·이용섭·김영록·조영택·김동철·강기정·유성엽·이시종·김재윤·김상희 의원 발의)

6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홍정욱·신학용·배영식·정해걸·이윤석·신영수·유성엽·서병수·이종혁·정병국·김성태·손범규·박민식·임영호·이명수·김선동·심대평·권경석·김효재·황우여·이정선·한선교 의원 발의)

6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강용석·권경석·김부겸·김태원·여상규·이용섭·이윤성·정두언·정해걸·최구식·현기환 의원 발의)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신학용·유기준·김정권·김성순·권영진·임영호·이성헌·이명수·이한성·배영식·조배숙·이해봉·윤상현·정병국·손숙미 의원 발의)

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이한성·신상진·김동철·유성엽·김성곤·전혜숙·김영록·이용경·유원일 의원 발의)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현경병·이찬열·최경희·이한성·이인기·신상진·박순자·주성영·정갑윤 의원 발의)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영록·조배숙·이종걸·주승용·백재현·김우남·최규성·여상규·정영희·박영선·권영길 의원 발의)

69.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정영희·이한성·김정권·유성엽·이해봉·임영호·심대평·이시종·조경태·김성곤·권영진·김부겸·임해규·이군현·조전혁 의원 발의)

70.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송민순·안규백·허원제·박보환·서상기·조전혁·이성헌·조문환·김용태 의원 발의)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박영아·임해규·이군현·김선동·조전혁·박보환·권영진·이철우·김세연·정두언·황우여 의원 발의)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강기정·김영진·김재균·조배숙·최규식·조승수·최재성·조영택·김부겸·우제창·김동철 의원 발의)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신학용·김성태·김재윤·이춘식·정해걸·한선교·김우남·박준선·정갑윤·신성범·이사철·이계진·원유철·정진섭·송훈석 의원 발의)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김학송·권영세·진영·유승민·김성식·김옥이·심대평·이진삼·정의화·정하균·이성헌·원유철·노철래·황진하·김성곤·이한성·서상기·이윤성·최연희·윤상일·김혜성·유성엽·권성동·이용경·김장수·원희룡·오제세·송민순·박진 의원 발의)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정옥임·김성회·이한성·김학용·박준선·김옥이·황영철·조원진·김용태·유정현·이철우·조진래·강석호·김성식·황우여·윤석용·강용석·정해걸·배은희·이은재·김정권·강명순·나성린·강성천·박종근·홍사덕·이종혁·장광근·최구식·정진섭·이범래·손범규·최병국·구상찬·김장수·안효대·신지호·고승덕·이윤성·주광덕·이명규·황진하·김선동·장윤석·김소남·박희태·허천·김광림·백성운·김충환·임두성·차명진·윤영·김효재·조문환·진성호·조윤선·원희룡·정양석·현기환·조진형 의원 발의)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찬열·안민석·김재윤·양승조·김우남·백재현·이성남·송영선·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108)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찬열·안민석·김재윤·양승조·김우남·백재현·이성남·송영선·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121)

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창수·임영호·이명수·권선택·김낙성·류근찬·변웅전·김용구·권영길 의원 발의)

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강기정·조정식·전혜숙·김진애·안민석·김우남·박은수·김상희 의원 발의)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장병완·양승조·유선호·이용섭·김재윤·전혜숙·홍희덕·권영길·강기갑·최재성·김재균·김우남·김영진·조영택·안민석·유성엽·박선숙·백재현·박은수 의원 발의)

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곽정숙·이정희·강기갑·홍희덕·유성엽·김영진·안민석·조승수·김상희 의원 발의)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동철·최규성·안민석·장세환·장병완·김상희·권영길·홍영표·김재균 의원 발의)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김성태·이성헌·조전혁·황영철·정두언·이해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7577)

8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화수·윤영·송훈석·안형환·김세연·김영우·조진형·김금래·김우남 의원 발의)

8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손숙미·이종혁·원희목·조원진·조진래·박순자·김정권·이명규·박종근·배은희·이두아·박보환 의원 발의)

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097)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43)

89.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조전혁·서상기·박보환·신지호·이상권·김동성·원희룡·김옥이·김성회·배은희·이한성·장윤석·권영진·이사철·강용석·김재경·김낙성·유일호·강승규·최구식·김충환·김호연 의원 발의)

90.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조전혁·서상기·김용태·김세연·황우여·박보환·신상진·원유철·이애주·정옥임·정두언·권영진·임태희·이군현·박영아 의원 발의)

9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정병국·이정선·박순자·이영애·김성조·이애주·윤상현·신지호·조진래 의원 발의)

9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백재현·양승조·장세환·변재일·안민석·박기춘·송민순·김충조·서갑원 의원 발의)

9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유성엽·김재경·유승민·권성동·이한성·유기준·김부겸·김태원·홍정욱·손숙미·현기환·송영선·신성범·박상돈·최인기·이성헌·이인기·이정현·김성태·김정권·김정훈·김성회 의원 발의)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최영희·김영록·김부겸·김영진·이찬열·김동철·박은수·박기춘·김재균·오제세·백원우·김춘진·최문순·조승수·송영길·신학용·강기정·조경태·이춘석·권영길·안민석·서종표·강기갑· 김우남·김성순·서갑원·신건·이명수·강창일·이정희·박선숙 의원 발의)

9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영진·김춘진·권영길·박은수·박주선·안규백·양승조·원혜영·이종걸·이춘석·조영택 의원 발의)

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성수·손범규·이인기·김성태·김금래·이성헌·홍사덕·안형환·허원제·강승규 의원 발의)

9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안홍준·이한성·신상진·김효재·이성헌·박보환·서상기·정두언·김충환·권영진 의원 발의)

9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현경병·김동철·박선숙·유성엽·박은수·김성곤·전혜숙·김영록·이용경·유원일 의원 발의)

99.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박보환·손숙미·김세연·박영아·홍정욱·조원진·이해봉·유승민·원희목 의원 발의)

10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백재현·양승조·장세환·변재일·안민석·박기춘·송민순·김충조·서갑원 의원 발의)

1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성수·손범규·이인기·김성태·김금래·홍사덕·안형환·허원제·강승규 의원 발의)(의안번호10408)

1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김영우·신상진·차명진·이종혁·이화수·유성엽·김금래·주광덕·유정현 의원 발의)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인기·김성수·권영진·김성동·이한성·성윤환·김금래·신영수·김성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97)

1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김상희·장세환·권영길·장병완·김동철·홍영표·박주선·안민석·유성엽 의원 발의)

1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윤석용·이철우·김영우·최구식·김세연·서상기·박보환·황영철·이정현·김선동·신성범·정갑윤·정두언·주광덕 의원 발의)

106.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용구·김우남·신건·강창일·정동영·김성수·김춘진·김상희·권영길·안민석·김유정·곽정숙·김영진 의원 발의)

10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기준·김선동·임해규·권영진·유정현·이종혁·장제원·황영철·김성태 의원 발의)

1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장제원·이윤성·신영수·이종혁·정의화·안상수·현경병·현기환·권영진·김정권·박순자·나성린·윤상일·이인기 의원 발의)

1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용구·김우남·신건·강창일·정동영·김성수·김춘진·김상희·권영길 의원 발의)

1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오제세·안민석·김춘진·최문순·홍재형·김영진·김유정·노영민·유성엽·조경태·박병석 의원 발의)

1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김성곤·유승민·이인기·조진래·이성헌·이종혁·김혜성·정영희·윤상일 의원 발의)

11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허원제・박보환・김세연・권영진・전혜숙・김소남・서상기・안효대・유성엽・임해규・이군현・배은희 의원 발의)

114.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5.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용구・김우남・신건・강창일・정동영・김성수・김상희・안민석・김유정・김영진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5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이상민 의원,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10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전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제89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의원 인천 남동구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인천 남동구을 출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이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의 민원 제기와 부당한 폭행・협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하게 되어 교원과 학생이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어서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부과하였다면 국가는 동시에 교원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권리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규정들은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단일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본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출입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실 때 전화 한 통 정도 학교에 미리 통보하고 가시는 정도지 학부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오해는 불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9항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출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은 사학의 자주성 및 특수성보다는 공공성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적 교육추세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사학에 대한 정부 재

정지원을 확충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임과 더불어 재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통제를 실시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학교법인이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학교 해산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사전적 규제 일변도의 사립학교법으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학에 대해 사전적 규제에서 선진국 형태의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사학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육성의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민 의원 양해하시면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의사일정 제50항과 제7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는데 이상민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 출신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성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 남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건강 문제를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기준에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교사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과목이 개설되고 국가 수준의 보건교육 의무이수 등 필요한 요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교사 전환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등학교 정교사 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가해서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건교사의 사기진작 등 현행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에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또는 간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초등보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초·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올리되 다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학생·학부모들이 살인적인 부담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평균이 5% 정도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 억제를 둔 현행법의 실효적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3년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당초의 지배적 논의였던 3년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도 모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호 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3항·83항·87항·88항·106항·114항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평생교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평생교육센터가 수행하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연구와 지원업무를 앞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 교원의 지위를 가지는 강사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도 국립 의과대학 재직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보다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법인이 이사회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화상회의 방식의 이사회를 허용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를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법안들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의 한글화·순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당해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감안하시어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유성엽 의원 예.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유성엽 의원께서 의사일정 107항, 의사일정 110항, 의사일정 115항,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설립·육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조기집행 등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연구의 지속성이 훼손되고, 인건비 삭감·신규인력 증원 억제 등 동일한 공기업 정책이 적용되어 우수인력 확보 곤란으로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가 어려워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기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연구기관

의 혁신·관리에 자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연구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이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어 우수 연구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최대 65세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토록 하되 우선 62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연구기관의 직위 중 기관의 특성 및 우수 연구자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의 범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과하는 등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이공계 등 우수 연구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 거양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1997년도부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주된 재원이 되는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법정부담금 요율이 97년 이래 계속 고정되어 있어 기금의 수입은 정체 중인 반면 원자력 안전확보 등 연구개발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로 운영자의 법정부담금 요율을 현행 kW/h당 1.2원을 곱하는 것에서 kW/h당 1.3원을 곱하는 것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상향 조정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의 안전확보 등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3건의 개정법률안의 의미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김태원·이한성·주광덕·김혜성·박보환·현기환·고흥길·홍사덕·임해규·박준선·김성수·정미경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변재일 이어서 아까 의안상정 과정에서 주광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 법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황우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이거와 관련된 겁니까?

○황우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이것이 2010년 4월 13일을 2011년 4월 13일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15일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추가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법 제59조에 대한 의결이 아니고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16항으로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황우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황우여 위원 황우여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의사일정을 정하고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사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안결정 내용에는 인천대학교 법인화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공표가 되었고 심사보고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 의안에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만약에 의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엄격한 협의와 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절차로 모든 국민 앞에서 공표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의사일정이, 인천대학교 법인화법이 채택된 적이 없지요, 아직까지.

○황우여 위원 지난번에, 어제까지만 해도……

○위원장 변재일 그것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한테 협의를 요청한 명단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4건의 법률안은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우여 위원 협의도 마치지 않은 법안을 컴퓨터 인터넷에 올렸다는 말씀인데 국회법에 의하면 의사일정 작성은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재일 예.

○황우여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그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까지 받아보고 또 어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심의해 달라는 요청도 받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0시경에 이것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협의도 되지 않은 것을 국민 앞에 공표하셨다는 말씀인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후에 또 그것이 내려졌다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재일 상임위원회 행정실에서 이번에 상정대상 법률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동안 의안 회부된 모든 법안을 다 보내 주신 겁니까?

○위원장 변재일 이번에 상정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기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차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 최종적으로 조율을 거쳤습니다마는 4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해서 오늘 상정되는 명단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오늘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체토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명언하신 바에 따르면 최초에 의안상정에 대한 협의를 오늘 아침에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변재일 오늘 아침까지 했습니다.

○황우여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재일 여야 간사들한테 명단을 준 지는 꽤 됐지요. 일주일 전에 명단을 주었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리고 명단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간사를 소집하셔서 합의를 본 것은 1회에 한 했고 오늘 아침이었구먼요?

○위원장 변재일 여야 간사 간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차에 걸쳐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요청했고 오늘 아침까지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4건의 법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여 위원 어제 전산망에 올라온 것에 의하더라도 의사일정하고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해 가지고 죽 나오는 법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일 뿐이고 여기서 최종 채택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회 행정실에서 제시한 안건은 채택되지 않고 상정할 수 없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러면 이 의사일정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간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올리셨습니까?

○위원장 변재일 의사일정안은 간사 합의가 최종 안 된 것도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향후에 의사일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에 안건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은 의사일정안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어서 최종 확정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상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왔는데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행정실에서 이번에 올렸으면 하고자 하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요청한 안건을 갖다가 미리 알려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올려서 알려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 관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앞에 공표하는 것은 상정된 것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제가 법에서 정한 시간대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상정 법률안과 의사일정의 합의가 상당히 지연된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되어서 위원들한테 통보가 되고 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정되는 법률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할 수가 없었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이나 위원 보좌관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앞으로 상정 예정인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 주고 상정 예정인 법률안에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위원 보좌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라고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빚었다면 혼선이 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알려 드리거나 알려 드리는 절차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양당 간사 모두 안 계시기 때문에 간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만 일단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전산망을 통하여 공표되는 의사일정은 국회 내부적인 합의를 다 마치고 협의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올리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원장 변재일 그렇다면 의사일정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사일정은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리는 것은 전부 '안'이라고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안'으로 계속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간사들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혼선이 일어나서 국민들로서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재일 어제 저녁까지 두 분 간사에게 계속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4건의 법률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접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재일 말씀하시지요.

○박보환 위원 법안 상정 문제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18대 국회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 교과위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상정조차 못 되고 있는 법안, 1~2년이나 묵은 법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된 법안을, 그것이 쟁점법안이든 또는 비쟁점법안이든 상임위에서 상정도 안 되고 잠재운다는 것은 법안을 발의한 동료 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상정한다고 그 법안이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말 치열하고 또 신중하게 꼼꼼히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쟁점법안이고 또 여야 간에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법안이라면 일단 상정한 후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보류하거나 또 소위 안건으로 상정 안 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의원님들 법안 하나하나를 만들고 제출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낸 법안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상정도 안 되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

다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법안상정이 비록 두 간사님한테 위임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이 법은 되고 또 저 법은 안 되고, 두 간사님께서 제출된 법안의 통과 여부도 아닌 상정 여부를 갖고 이렇게 임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상임위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이유 불문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상정해 가지고 소위로 넘기고요. 소위에서 논의는 지금까지처럼 여야 간에 협의해서 논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그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두 간사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양 교섭단체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법안 이외에는 개별 의원의 의견에 관계없이 전부 상정한다 이런 원칙에 여야 간사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교섭단체가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위원장과 양 교섭단체 대표 간사들과 협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알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하도록 하고, 모든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말썽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상정제를 채택하자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양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각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교섭단체 대표 간사님들한테 그런 뜻을 함께 공유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0항까지 7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 71건의 주요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헌 의원, 김형오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거나 필수전형자료로 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발해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교교육 과정과 수능시험 간의 연계라는 면에서 볼 때 고교교육 과정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도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입법 목적이나 내용 면에서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정법을 별도로 제정할지 혹은 방금 말씀드린 법 등 기존의 법체계와 함께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공모를 통하여 임용된 교장의 임기·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유에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사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강사 대신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유치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회 및 법제처의 용어 표준화 기준, 최근의 입법 경향에 비춰볼 때 부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징계사유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되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개별 법률들에서 특정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시효 10년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의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특정 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유로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그 평가요소에 한국사 지식 또는 그 이해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별도의 휴직사유로 할 경우 난임 사실 및 치료의 공개를 우려하여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휴직제도의 이용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질병휴직사유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기관도 정보공시 대상기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그 기관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에는 학생 및 교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과 함께 명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임교원의 취득학위와 경력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기관이 장학금 수혜사항을 공시할 때 재원에 따라 교외장학금·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의 학습자로서 의무 중에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현행법에서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표현은 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예측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의무교육은 학교교육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외의 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교육 중심의 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본인의 적성이나 소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초·중등교육 등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으로 교육을 대별하면서 각 교육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 사회교육과 구별되는 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학교교육 외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기초가 되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교육불평등 해소 우선학교를 지정하여 교육불평등 해소사업을 실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옥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도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 동해·독도의 표기와 관련한 오류 시정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도 연구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합병 및 해산 시 재산 처분의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립대학 합병 및 해산 시 재산 처분의 특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피합병법인의 재산출연자 등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재산의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나 학교법인의 법리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종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는 등 고등학교의 체계를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이외의 모든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경우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발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연수를 의무화하며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집시간을 일과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위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이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 정교사의 자격기준으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2010년부터 보건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됨에 따라 보건교사도 다른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과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건교사에게 정교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0년도부터 보건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으므로 보건과목의 선택 상황 등 운영 관련한 제도의 정착과 보건교사의 수업 담당에 따른 연수, 양성체제의 보완 등 보건과목 관련한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비교과 교사도 보건교사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과 담당 관련 여부와는 별도로 정교사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지의 여부 등 정교사 자격제도 전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

다.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기초학력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보정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정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하여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재평가하기 위한 국민기초학력인증시험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서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 인하에 관련하여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의 총액 대비 비율을 서울시의 경우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5%, 기타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3.6%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기도도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현행 5%에서 3.6%로 인하하여 다른 도 및 특별자치도와 동일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 지방세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2009년도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10년에도 시·도세 전입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 총세입예산의 13.7%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된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경기도도 다른 도와 같은 수준으로 시·도세 전입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다른 도와 달리 광역시 부담비율인 5%를 부담하게 된 것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 다른 도는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만 부담하고 있던 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시·도세 전입금에 반영하여 그 비율을 3.6%에서 5.0%로 인상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1항부터 10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고등교육법에 대한 11건의 의원발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갑원 의원안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고 등록금 면제 비율을 15%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현재 등록금 상승률이 감소 추세임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의원안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권영길 의원안에서는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의원안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의 등록금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안은 물가상승률과 등록금인상률의 추이에 따라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조경태 의원안입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대학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그 비용이 등록금에 전가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하 조경태 의원안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안은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한 자

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석·박사 통합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료자에 대해서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현행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하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조정안을 작성하여 권고하도록 하고 이를 수락하면 그 변동액을 추가로 징수 또는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금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등록금산정위원회와 등록금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성 등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의안으로서 권영길 의원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학생·학부모·대학의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학생 및 학부모 중 정부 소속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그동안 근무 조건, 보수 등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었던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명칭을 김영진 의원안의 경우 '연구강의강사'로, 정부안은 '강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현행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과는 별도로 시간강사에 대하여 14조의2를 신설하여 이와 다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14조의 교원의 대상에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각 국립대학에서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이 성과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등 성과급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규정된 성과급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경제 상황이나 국가의 재정상태, 민간의 보수 수준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공무원 보수 수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서상기 의원안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에 규정된 대학 적립금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사립대학이 수익용으로 활용할 적립금의 투자 범위를 기존 증권투자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의 과다한 적립금 누적 등 적립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적절성과 사용 내역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적립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립금이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 창출 및 투자금의 회수 시기가 불확실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지나치게 과다한 적립금이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적립금의 투자 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8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의원안, 김선동 의원안은 군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부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군복무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납부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 기간 동안 대출이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매년 약 51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4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 학점 요건 등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상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적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 도입 당시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도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에 대한 2건의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의원안은 국가가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일정 기준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인정, 지원 및 관리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하며 이와 관련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평생학습도시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춘진 의원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하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1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원 이용원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7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의 범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는 과기정 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국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정부 측에 조치를 촉구한 바 있으므로 그 조치 결과를 보면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입법 여부가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8항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기부금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과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금 재원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조성 등 경상적 성격의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은 연간 조성액을 초과하는 규모로 수행되고 있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서 교과부장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에 과학기술기본법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그 심의 상황을 보면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9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이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경우에 부도 등으로 사업비의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기업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의 회사 합병의 법리에 의하면 피합병 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에 비추어 볼 때 합병 법인에게 일률적으로 부당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0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정 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분류·관리하고 소관 감독관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이 개정안의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연구기관을 현행 '기타공공기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구분·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보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1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정 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을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소관으로 할 경우 출연연구기관의 범부처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기초산업 간 융·복합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여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소관으로 이관시킬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 개편과 관련된 정부 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개편 방향이 설정된 이후 이를 종합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112항 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정 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회의 임원 해임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연구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임원의 중요한 신분 변동 사항에 해당하는 해임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과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유사 입법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15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의 법정 요율을 현행 ㎾/h당 1.2원에서 1.3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정 부담금 요율을 인상함으로써 원자력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자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의 수요에 대처하고 원자력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담금 요율을 상향할 경우 2012년 153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를 비롯하여 2030년까지 총 4700여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기대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인 지경부 및 부담 주체인 한수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6항 및 114항은 알기 쉬운 법령 사업으로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문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김상희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상희 위원 예, 하겠습니다.

우선 서상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법안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에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적립금 문제가 과다한, 등록금을 가지고 적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 적립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적절하게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적립금에 대한 투자 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적립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등록금을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시에 따라서 그것을 자료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서상기 의원님 법안의 취지는 적립금의 활용을 수익 쪽으로 해서……

○김상희 위원 취지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취지가 그런 것 같고요.

○김상희 위원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불확실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사실은 학교에 적립금을 쌓아놓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가 사실은 전문적 투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앞에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에서도 그렇게 지적되어 있는데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김상희 위원 지금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여기에 보면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면 관할청은 학교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규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의 적립 한도 부분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적립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적립금의 경우에 선진국처럼 적립금이 굉장히 투명하게 정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쪽으로 간다면, 또 수익 창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하버드라든지 이런 해외 명문들의 경우에는 그런 쪽의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관 변경을 사전 인가제에서 사후 보고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단 법령에 위반되는 정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관할청의 시정명령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전 인가를 하면 너무 지나치게 과잉 규제가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후 규제 가능하도록 관할청의 시정명령 조항이 신설되니까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개정안처럼 정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사후보고제로 하는 것보다는 정관의 내용 중에서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비영리 학교법인의 공익적 역할로서 필요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저희 안에도 재산 처분이라든지 임원 취임 등에 대한 중요 사항들은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반영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학교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35조는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재산은 교과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사회적으로 분쟁을 유발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담당자에게 답변을 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대학선진화관 김응권 예,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대학선진화관 김응권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쉽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고, 지금 논쟁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게 김선동 의원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좀 수월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립대학의 책임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 과정에서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어느 한쪽으로 미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저희들이 논의 과정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다음에 박보환 의원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명단에 공시하도록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잠깐 저희 담당자에게 답변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정보통계국장 한석수 교육정보통계국장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김상희 위원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분명한 입장이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정보통계국장 한석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양쪽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은 국회에서 좀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조전혁 위원 질의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상정한 법안이 교육공무원법만 해도 상당히, 열몇 건이 되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들께서는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조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전혁 위원 장관님, 전 세계에 사학법이 있

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학법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특히 구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없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본……

○조전혁 위원 제가 알기로 일본, 중국, 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그냥 일반 재단법인에 준해 가지고 사학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학진흥법에 가까운 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전혁 위원 또 한 가지가 말입니다, 우리가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고 지금 기 법인화되어 있는 국립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KAIST도 법인화된 국립대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법인화된 출연기관입니다.

○조전혁 위원 울산대도 마찬가지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울산대학은 법인화 국립대학입니다.

○조전혁 위원 여기에 개방형 이사제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개방형……

○조전혁 위원 소위 말하는 사학법에서와 같은 개방형 이사제 없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러니까 구성원들로만 구성돼서는 안 되고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이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결국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민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처음에 구성한 거지요, 처음 구성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처음 구성할 때는 그게……

○조전혁 위원 하여튼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건 다릅니다.

○조전혁 위원 법인화된 국립대나 아니면 일반 국립대에 사학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평의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라면 국립대학하고 법인화된 국립대학에 이거 먼저 설치해야지 왜 사학법에 이렇게 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교원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그게 국공립학교에도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조전혁 위원 차관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

○조전혁 위원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학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소리가 여기에서 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보면 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게 사학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어떻게 보면 공교육은 시스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에서 혁신, 이노베이션(innovation) 이런 것들은 일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학 같은 데서 다양한 교육 실험들이 일어나고, 또 그게 성공한 실험들이 공립에 접목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동시에 역시 또 사학들이 공교육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무성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장관님,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회계 지금 어떻게 공적 감시를 받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정확하게 좀, 제가 말씀……

○조전혁 위원 외부 회계기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지요.

○조전혁 위원 외감을 꼭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전혁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사립

학교, 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가 외부 회계기관 회계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정 부분 요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국장님 계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선진화관 김응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전혁 위원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회계 관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장 회사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외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많이 주고 그에 따른 책무성을 또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또 최근에도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장관님한테 요구했던 부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입생 돈 받고 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교육기관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때 요구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러면 단호한 조치를 내려 주셔야지요. 학교 돈을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뇌물을 받아먹는다든지 이게 조직적으로 일어난 학교는 교육을 포기한, 학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저기입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 가지고 인가 취소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갖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취지에 공감합니다.

○조전혁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좀 이야기가 나왔던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선 학교에서는 그 정보가 다 알려진 정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학교 현장에서는…… 예.

○조전혁 위원 학교 선생님들 일단 다 알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아마 다 알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그 학교 현장에서는 오픈된 정보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글쎄, 오픈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조전혁 위원 그 학교 내에서는 다 알려진,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이야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도 제가, 모든 이에게 다 알려져 있는지 그건 또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전혁 위원 일단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은 어느 분이 어느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다 알려진 정보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조전혁 위원 그리고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각종 계기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이런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게 앞에 실무자도 답변했지만 학부모의 알 권리와 또 교사와 그에 관련된 분들의 사적인 정보 보호, 이 2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사적인 정보 보호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 학교 내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정보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공개한 것처럼 전국의 모든 교원들의 교원단체 정보 공개하는 식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그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관련 이익이 직접 있는 그런 대상자들은 알게 하는 게 나는 정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관련된 법적 검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하여튼 학교에 대한 정보는 세세하게 잘 알려 주면 줄수록 학부모들의 선택권, 학교교육에 대한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가능하면 학교에 대한 정보 공개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전혁 위원 어느 교사가 어느 특정 단체에 속해 있는지가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 부분은 논쟁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 정읍 출신 유성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전혁 위원님과 조금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전혁 위원님께서 외국에서 사학이 혁신을 주도하는 장점도 말씀하셨고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살려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학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라든지 비리 정도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저는 사학이 설립자나, 상속이라는 표현도 안 맞는 거지만 그것을 승계한 사람들의 어떤 편법적인 재산 운용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유성엽 위원 오히려 사학이라는 것은 재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서 어떤 공공성에 기여하겠다라는 취지가 무시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학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것을 후퇴시킬 수 있는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앞에서 말씀하신 사학에서 그런 사익 추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가능하면 투명성을 확대하고 사익 추구가 없도록 하는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 오히려 사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사학에 대한 우리 국가와 공공의 지원을 감안해 보면 가능하면 국가에서 사들여야 한다라고 봐요. 매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학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들여야 한다 그래서 개인의 손을 좀 떠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한국국제교육진흥원 법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제화를 촉진하자 또 국제교육 분야 진흥하자라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법인으로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지나치게 기능, 사무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법안에 보면. 이를 테면 신생 조직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업범위가 넓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타 기관과 기능 설정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어떻게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국립국제교육원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교육의 글로벌화가 많이 진전되면서 그와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조직처럼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전문성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형태를 출연기관으로 변경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유성엽 위원 일부는 그런 전문성을 살려 나가는 것은 중요한데, 국제 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 갖는 위상이라든지 이점도 있는 거거든요. 국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런 위상이 저해되어 가지고 오히려 활발한 활동, 책임 있는 활동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라는 점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 문제 말씀을 드렸지만 외통부에 있는 재외동포재단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과의 중복 문제도 차제에 검토를 해서 충분한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번 법제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님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것, 특정지역 근무 조건으로 지역에 우대를 해 준 점은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봐지는데 현재도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도서·벽지 말고도 농산어촌 일반이 과거에 도서·벽지를 우대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악해져 있습니다, 농산어촌 전반이. 그래서 도서·벽지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야 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실제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현재는 벽지에 가산점이 있지만 근무 가산점을 줄 필요도 있고 수당 같은 것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수당을 더 확대·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채용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다만 저희가 그동안 교사들을 순환시키면서 가산점을 주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한 1, 2년만 있으면 그냥 교사분들이 빨리 떠나시려고 하는 소위 역인센티브가 많이 존재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용을 아예 농어촌이 됐든 도서·벽지가 됐든 지역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 채용도 그렇게 해 주고 거기에 근무했을 때 가점이라든지 수당의 특수성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영아 의원님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이 현재 몇 %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100분의 50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0%……

○유성엽 위원 10%예요? 행안부하고는 좀 틀리네요? 행안부는 50% 정도 되는데 말이지요, 특별교부금이.

○교육과학기술부인재정책실장 이상진 행안부하고 틀립니다.

○유성엽 위원 현재 취지는 동의를 해요. 실제 쓰는 것을 보니까 95% 정도가 재해대책 쪽으로 안 쓰고 결국은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 보자라고 하는데, 저는 취지라든가 걱정하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재해대책수요라는 것은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예방에 수요가 생겼을 때 특별교부금을 쓰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진이라든지 각종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반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시설을 관리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교육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까지를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하자라고 하면 지나치게 교육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박영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는 동감하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의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론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학교의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빨리 이런 쪽에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합니다.

○유성엽 위원 아니, 이 법을 통과해 가지고 내진설계에 대비를 해서는 안 되지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부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유성엽 위원 그것은 일반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재난에 근본적인 대비 차원으로 가야지, 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근본적인 재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되지만 충분히 재원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 시간관계상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문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김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위원 김유정입니다.

박보환 의원님 발의하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요, 장관님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답변을 주저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제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초·중등학교 공시 대상 정보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추가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15일 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등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공개로 인해서 침해될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 개별적 단결권 등의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그 판례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 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에서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그 신고서에 노동조합원의 수만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011년 올해 3월 29일 날 제정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9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23조를 보면 노조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보고 정보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과 여러 가지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교과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더 신중하게 잘 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리고 이철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내용이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이나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주요 핵심내용인데요.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기부금 모집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을 후퇴시키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3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급식법에는 학부모나 법인·단체 또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급식시설비나 설비비 등을 결론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2007년에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후원회를 폐지를 한 거였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니까 다시 한번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처럼 학교급식 재원 마련을 위한 후원회 주체를 개정법률안처럼 자치단체가 하느냐 또는 학교에 두느냐 이런 차이인데 결과적으로는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회귀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학교급식의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급식 논쟁을 할 때 의무교육에 학교급식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리적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를 떠나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초·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라도 학교급식법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후원회도 폐지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다시 후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견해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마 이 법안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급식의 좋은 질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기부금품 모집을 법에……

○김유정 위원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망이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사실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다만 자치단체별로 학년을 어디까지 하고 또 단계적으로 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후퇴되는 그리고 또 시·도 교육청으로 학교급식이 이관됐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후퇴되는 일이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향적인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 법이 제정되면서도 걱정하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제가 2월 임시국회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김선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인 것 같은데 취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부실 대학에 대해서 징벌적 규정으로 해당학교 학생들한테 학자금대출 제한하는 거요, 징벌적 등록금이 지금 KAIST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됐던 원인이었는데 문제 있는 사립대학의 책임을, 운영부실의 책임·경영부실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유사한 취지의 발표 하셨지요? 30개 학교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제한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게 8·9·10등급 소득상위층 아이들의 경우에 제한이 되는 거고요. ICL은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 하시는 부분은 최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앞으로도 경영부실 사립대학…… 그게 소득 상위층이건 ICL대출제도건 간에 학생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면 안 된다는 것이 객관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그러면 부실한 사립대학의 학자금대출 제한을 학생들에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단 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동일한 명칭의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해서 병합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정감사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현행 법령상 학부모가 공제 급여 청구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시도 하고 그래서 역시 국정감사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에서 학부모 공제급여 직접청구 절차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김춘진 위원 그런데 시도 안전공제회가 실제로 학부모의 공제급여청구서를 직접 받고 있는지, 중앙에서는 내려갔지만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또 각급 단위 학교에서 이러한 안내가 학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가 되었는지 이것을 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의원 생활 하실 때 대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었어요.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고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에 대한 근거를 넣고 구체적인 것은 개별 법률, 즉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학교만이 학생·학부모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에서 이탈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교육에서 이탈했다고 그래서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김춘진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정책 연구도 하시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춘진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학생도 숫자가 많고 학교 선생님도 많고 또 학부모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수렴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다면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주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운영 관련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도 강화하고 또 책임의식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제화 부분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어차피 학교 학생회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제화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법제화는 안 되어 있지만 학생회는 있는데 그것을 법정단체로 한다면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또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가 활성화돼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것은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 행사로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가해자는 있는데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요. 또 보호자가 있어도 아주 극빈자라서 돈을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를 위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더욱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 학생이 폭력 행사로 인해서 다쳤으면 우선 치료가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최우선적으로 치료와 보호 문제인데,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재정 문제를 우려하시는데 재정이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과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누가 때리고 다쳤는데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리고 특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조손가정이나 이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과 법률안 중에서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법률안은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박보환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유성엽위원님, 김유정 위원님, 김춘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오전에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5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국립과학관 등 16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상희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변재일
서상기	안민석	유성엽	이상민
임해규	조전혁	주광덕	황우여

○청가 위원(1인)

김세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용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제1차관	설동근
기획조정실장	이성희
연구개발정책실장	조율래
인재정책실장	이상진
대학지원실장	변창률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규석
국제협력관	배성근
기초연구정책관	윤헌주
전략기술개발관	양성광
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
미래인재정책관	성삼제
창의인재정책관	이진규
평생직업교육국장	김규태
대학선진화관	김응권
대학지원관	송기동
학교지원국장	김관복
교육복지국장	이준순
교육정보통계국장	한석수
원자력안전국장	손재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	정경택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

(2011. 3. 2 김정·김성곤·유승민·이인기·조진래·이성헌·이종혁·김혜성·정영희·윤상일 의원 발의)

3월 3일 회부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3. 7 권영진·윤석용·이철우·김영우·최구식·김세연·서상기·박보환·황영철·이정현·김선동·신성범·정갑윤·정두언·주광덕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3. 7 정영희·김용구·김혜성·노철래·심대평·신성범·안민석·유정현·윤상일·이윤성·임영호·조경태·허천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3. 7 이상민·임영호·이명수·이용희·변웅전·유성엽·김용구·권선택·류근찬·심대평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8일 회부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1. 3. 8 박기춘·박주선·이찬열·강용석·최규성·김성곤·강기정·주승용·유선호·서종표·조정식 의원 발의)

3월 9일 회부됨

학교체육진흥법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11. 3. 14 박영아·김을동·홍정욱·김태원·이은재·손범규·윤석용·이한성·노철래·김소남·강용석·박순자·허원제·신낙균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11. 3. 14 박영아·김을동·홍정욱·김태원·

이은재·손범규·윤석용·이한성·노철래·김소남·이해봉·강용석·박순자·허원제·신낙균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희 의원 대표발의)

(2011. 3. 14 최경희·원희룡·윤석용·이종구·이윤성·장제원·임동규·신영수·유재중·홍준표·이한성·원희목·강용석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희 의원 대표발의)

(2011. 3. 14 최경희·원희룡·윤석용·이종구·이윤성·장제원·임동규·신영수·유재중·홍준표·이한성·원희목·강용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5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3. 15 김상희·장세환·장병완·양승조·유선호·이용섭·김재윤·전혜숙·홍희덕·권영길·강기갑·최재성·김재균·김우남·김영진·조영택·안민석·유성엽·박선숙·백재현·박은수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1. 3. 15 권영길·곽정숙·이정희·강기갑·홍희덕·유성엽·김영진·안민석·조승수·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6일 회부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3. 21 노영민·김창수·양승조·김진표·주승용·김재균·강창일·최규성·박주선·김성곤·문학진·조경태·조정식·김영환 의원 발의)

3월 22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1. 3. 22 윤상현·권영진·김금래·김재경·김혜성·배은희·이학재·정미경·황영철·황우여 의원 발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1. 3. 22 변재일·양승조·안민석·조정식·원혜영·강기정·신낙균·김춘진·김진애·최종원·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3일 회부됨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1. 3. 23 김재균·전병헌·강창일·정장선·박주선·김영진·주승용·노영민·박은수·오제세 의원 발의)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1. 3. 23 김재균·전병헌·강창일·정장선·박주선·김영진·주승용·노영민·박은수·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4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3. 24 김상희·박은수·장세환·양승조·전현희·김유정·안민석·김영진·김부겸·백재현·강기갑·이정희·홍희덕·권영길·유성엽·유선호·최영희 의원 발의)

3월 25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11. 3. 25 박은수·주승용·백원우·장병완·추미애·양승조·김상희·강창일·변재일·이미경·김재균·최영희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월 25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3월 28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3. 31 김영진·김동철·최규성·안민석·장세환·장병완·김상희·권영길·홍영표·김재균 의원 발의)

4월 1일 회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의원 대표발의)

(2011. 4. 1 박영아·정의화·박보환·허원제·김성조·유일호·이한성·윤상현·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

4월 4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4. 6 김영진·최규성·김동철·안민석·김영록·김상희·조배숙·홍영표·김재균·장세환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4. 6 김영진·최규성·김동철·안민석·김영록·김상희·조배숙·홍영표·김재균·

장세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권성동·김태환·원희목·김성동·윤상일·장제원·유기준·이윤석·박준선·허천·한선교 의원 발의)

4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2011. 4. 12 김성곤·최인기·박은수·김효석·강봉균·강창일·유선호·김용구·조영택·박기춘·이윤석 의원)

4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및 신규 원전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2011. 3. 28 정동영·권영길·유원일·조승수 의원 외 10인 발의)

3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청원 회부

2010년 삭감된 2011년 민생·복지예산 복원 및 증액 요구에 관한 청원

(2011. 3. 4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팀장 안진걸로부터 천정배·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